

자동차보험약관 / 이론차

AXA

AXA 가

!!
!!
100 4 1 !! (2009 ~ 2012)
2 1 !! (2011 ~ 2012)
AXA 2001
AXA
AXA 가
AXA 가
AXA 가

자동차 사고 발생시..

발생 즉시 정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사고라도 일단 멈춘 후 사고를 확인합니다. 만약 사고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구조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의 부상상태를 확인하고 중상자의 경우에 주위 사람의 협조 또는 119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깁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
현장 보존 증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위치(백묵, 스프레이 등을 활용하고 사진기가 있으면 사진촬영), 사고장소, 사고물체의 흔적이나 증류를 기록 또는 보존합니다. 차대차사고의 경우는 쌍방이 연락처를 교환하고 간략히 사고경위를 작성 서명하고 보관한 후 보험회사에 제출합니다. 차량이 제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엔 교통소통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사고차량을 도로변으로 신속히 이동시킵니다. 사고목격자(연락처)를 확보합니다. 노상서비, 다통 등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경찰서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를 끼친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95.7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은 모든 물적사고에 대하여 경찰서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단순 후미 추돌사고 등 과실에 다통이 없는 경미한 사고는 사람이 다친 경우라고 서로 합의하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경찰서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보험회사의 통보시 보상(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보험자동차 - 사고일시, 장소, 내용, 피해상황 - 사고발생경위 등 피보험자 및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 경찰서 신고여부(경찰서 명)
1566-1566 (내선 3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보장소 - 각 보상서비스 센터 또는 콜센터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콜센터 : 1566-1566, 1588-1566 내선번호 4번)

- 주소가 변경된 경우
- 운전하는 사람의 연령범위가 바뀐 경우
 - 보험계약시 운전자 연령한정특약을 가입하신 고객님의께서는 보험기간 중도에 해당 연령 미만의 운전자가 운전하게 될 경우 반드시 당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으셔야만 사고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중도에 자동차를 바꾸신 경우
- 그 외 보험계약 당시의 계약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

※ 고객 안내문을 못받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566-1566, 1588-1566 (내선번호4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금융서비스의 이용

고객의 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이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보험회사, 대한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은행연합회, 업무위탁 회사 및 기타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이하 "제3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활용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제휴·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 신청

1. 고객은 가입신청시 동의한 본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또는 당사의 보험·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제공·활용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업무위탁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동의철회는 제한됩니다. 본인정보의 활용 제한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연락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접수 : 당사 홈페이지 (www.axa.co.kr) | 전화접수 : 1566-1566
서면접수 : 71 4 12 AXA

2. 위의 신청과 관련한 불편과 애로가 있으신 경우에는 당사의 개인정보보호 관리보호인 또는 대한손해보험협회 및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개인정보보호 관리보호인**
전화 : 1566-1566 | 주소 : 71 4 12 AXA
- **대한손해보험협회 정보보호담당자**
전화 : 02-3702-8544 | 주소 : 5 68, 6, 7, 8 (,)
-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전화 : 금융감독원 민원실 (국번없이) 1332 | 주소 : 38

※ 단, 신규거래 고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 및 오류정보 정정 요구

1.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개인정보보호 관리·보호인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고객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주요정보 내용 등을 통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고객은 신용정보업자 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의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 정정 요구 및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감위에 시정 요청 가능

2. 고객은 본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개인신용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정보업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 등 법질서 문란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신고센터**
전 화 : (02)3145-7518
인터넷 : www.fss.or.kr
- **대한손해보험협회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전 화 : (02)3702-8585
인터넷 : www.knia.or.kr

1566-1566
www.axa.co.kr